

인천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가단2510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신재욱

변 론 종 결 2022. 12. 20.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1. 12. 2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12. 21. 접수
제5123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2018. 7. 4.자 41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자이다. C은 2021. 12. 21.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척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도 C의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C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

별지